교육윤리 지침

2013. 3. 1 제정
2024.11.1. 일부개정
2025. 10. 1 개정
<교육혁신팀>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고려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함) 「교원윤리 강령」 및 「교원윤리 규정」의 근본취지에 따라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품격 있는 학문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, 학생지도 등에 관한 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.10.1.>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'교원'이란 본교에서 학습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 및 강사를 말한다. <개정 2024.11.1.>
2. '교육윤리'란 교원의 강의·교수활동,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, 학생의 지도·관리에서 지켜야 할 기본덕목, 태도 및 관련 행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본교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교원에게 적용된다. <개정 2024.11.1.>

제4조(일반의무) ① 교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. <개정 2025.10.1.>

② 교원은 법적 의무를 넘어 고도의 윤리적·도덕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강의를 진행한다. <개정 2025.10.1.>

③ 교원은 학생들에게 학습윤리 준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, 학생이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 <개정 2025.10.1.>

④ 교원은 학생들이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문의 진실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, 본교 「AI 활용 가이드」를 바탕으로 수업 목표에 부합하는 AI 활용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. <신설 2025.10.1.>

제5조(강의계획) ① 교원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의 성취목표, 수업방법, 평가방법, 학습계획 등을 포함한 강의계획안을 작성하여, 본교에서 정한 입력 기간 내 제출한다. <개정 2024.11.1.>

② 교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제시한 강의계획안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다.

제6조(강의준비) ① 교원은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하게 강의를 준비한다. <개정 2025.10.1.>

② 교원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최신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, 창의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법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.

제7조(강의 진행 및 시간) ① 교원은 본교가 정하는 수업일수를 준수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취소 또는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, 강의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미리 통보한다.

② 교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학습자의 수강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25.10.1.>

③ 교원은 불가피하게 휴강을 했을 경우 학생들과 협의하여 보강을 진행한다.

④ 교원은 강의시간을 준수하며 지각 및 단축수업을 자제한다. <개정 2025.10.1.>

⑤ 교원은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시간 전반을 충실하게 계획하고 운영한다. <개정 2025.10.1.>

⑥ 교원은 자신의 권위와 책임 하에 수업을 진행하며, 특히 대리강의를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5.10.1.>

⑦ 교원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수업 간 합반 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5.10.1.>

제8조(교수법) ① 교원은 학습자의 다양성과 교과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법을 개발·적용하고, 학습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 <개정 2025.10.1.>

② 제1항이 정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.

1. 삭제 <2024.11.1.>
2. 강의시간에 과도한 비중의 학생발표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5.10.1.>
3. 교과 내용의 특성상 발표 수업이나 팀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, 학습자의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하여 발표 이후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. <개정 2025.10.1.>
4. 교과 내용의 성격을 벗어나는 영상자료는 상영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5.10.1.>
5. 교과 내용의 성격을 벗어나는 교외활동을 진행하지 아니한다.
6. 학습자가 「AI 활용 가이드」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급변하는 최신 교수법을 파악하여 수업에 활용한다. <신설 2025.10.1.>

제9조(강의태도) ① 교원은 강의 중 학습자들의 다양한 견해 및 시각 등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.

② 교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차별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

③ 교원은 종교적 또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자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실험·실습·실기) ① 실험·실습·실기 교과목의 경우 교원은 학습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운영한다.

② 교원은 실험·실습·실기 교과목을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, 조교에게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.

제11조(출석관리) 교원은 「출석 인정 지침」에 따라 학습자의 출석을 엄정하게 관리하며, 출석 부정행위(예: 대리출석)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. <개정 2024.11.1.>

제12조(과제) ① 교원은 강의에서 다루어지고, 다루어져야 할 의미 있는 과제를 고안한다.

② 교원은 학습자의 과제작성에 대한 방법 및 지침 등을 구성하여 명확히 제시한다.

③ 교원은 학습자가 과제작성 시 학습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, 본교 「AI 활용 가이드」를 숙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AI 활용 방침을 제시한다. <개정 2025.10.1.>

④ 제3항이 정하는 학습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과제물의 표절, 변조 또는 위조
2. 과제물의 구매·양도·재사용
3. 「AI 활용 가이드」 위반 <신설 2025.10.1.>
4. 그 밖에 학문의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<제3호에서 이동 2025.10.1.>

제13조(시험) ① 교원은 학습 성취도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시험문항을 개발한다. <개정 2025.10.1.>

② 교원은 시험 감독을 엄격하게 하여 학생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직한 학습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. <개정 2025.10.1.>

제14조(평가) ① 교원은 학습자의 성적평가와 관련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히 제시하고, 그러한 평가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한다.

② 교원은 학습자들의 평가 이의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한다.

제15조(학생지도) ① 교원은 학습자가 기본교양 및 품성과 전문능력 및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지도한다.

② 교원은 학사지도 등을 위해 학습자의 면담 요청에 정기적으로 응한다. <개정 2025.10.1.>

제16조 (조교) ① 조교는 「조교임용규정」을 준수하고, 교원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. <개정 2025.10.1.>

② 조교는 교원윤리에 관한 학교규칙을 숙지한다.

③ 조교는 실험·실습·실기 수업 조력 시 학습자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성실함과 책임감 있게 임한다.

제17조(대외관계) ① 교원은 본교 강의를 매개로 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교원은 다른 기관에서 강의 또는 강연을 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일회성 강의 또는 강연: 학과(부)장의 허가
2. 정기적·계속적 강의 또는 강연: 대학(원)장의 허가

③ 교원이 정당한 사유(예: 외부 출제위원 등)로 인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본교의 교과목에 대하여 보강으로 보충할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에 학과(부)장은 대체강의자를 지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.

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강의를 하지 못한 교원이 외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본교로 입금 처리한 후 정산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8조, 제11조 개정)

부 칙

이 지침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4조, 제6조 내지 제8조, 제12조, 제13조, 제15조, 제16조 개정)